

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

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Market and Our Countermeasures

이 소 현*
Lee, Soh-Hyun

목 차

- I. 서론
- II. 법률시장 개방의 의의 및 한·미 FTA 주요 내용
- III. 외국법자문사법의 주요내용
- IV. 외국법자문사 진출 현황 및 예상되는 효과
- V. 우리의 대응
- VI. 결론

국문초록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외국법자문사들은 단계적 개방 정책에 따라 아직은 원자격국법과 국제 공법에 관한 자문만을 담당하지만 2단계부터는 외국법사무와 국내법사무가 혼재된 개별 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며 3단계부터는 합작투자기업 설립과 한국 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점진적·단계적 개방과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책 기조로 삼고 법률시장 개방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상의

논문접수일 : 2013.03.30

심사완료일 : 2013.05.10

게재확정일 : 2013.05.13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유보를 통해 단계적 개방을 실현하고 외국법자문사법을 통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과 규제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당해 협정 및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법조인, 정부 등 관련 주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법률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FTA), 외국법자문사법, 단계적 개방, 유보, 대응

1. 서론

2011년 3월,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 되며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개방여부에 대한 찬반논의를 넘어 생존과 승리를 위한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고민할 때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은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threat)이지만 그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국 변호사의 활동범위를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위기 측면을 최소화하고 기회의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앞서 법률시장 개방을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였다. 상대적으로 빠른 1987년 법률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자국 법률시장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일본이다. 국내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였으나 동시에 일본 변호사 고용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 활동범위를 규제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개방의 폭을 넓혀 외국 로펌의 일본 변호사 고용을 허용했을 때에도 법률시장의 구조적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 개방 정책의 채택,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 등을 고안하였다. 또한 국내법을 통한 일률적 개방이 아닌 FTA 등을 통한 개별 국가 별 개방을 시도

함으로써 개방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국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률시장 개방의 의의 및 이와 관련한 한·미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둘째, '외국법자문사법'으로 구체화 된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을 통해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외국법자문사의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현재 취해지고 있는 다양한 대응들 및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II. 법률시장 개방의 의의 및 한·미 FTA 주요 내용

1. 법률시장 개방의 의의: 의미, 배경, 현황

법률시장 개방이란 국가에서 인정받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의 자격을 취득, 보유한 사람이 그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다른 국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²⁾

법률시장 개방의 가장 주요한 배경은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상 자유화의 물결이다. 전 세계적인 개방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이며, 한국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서부터 논의에 참여하였다. 법무부(2010)에 따르면, 한국 법률시장 개방에는 대외적인 요인 외에 대내적인 요인으로서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국내 법률서비스

- 1)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특징은 개방이 통상협상인 FTA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내법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내법에 의해 모든 외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한 것과는 대별되는 독특한 법률시장 개방 형태라고 평가한다." 이기영, "법률시장 개방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연구", 「법조」, 제60권 제10호 통권 제661호, 법조협회, 2011, 228면.
- 2) 조능래,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법무사」, 2012년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012, 7면.

업계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 등도 한국 법률시장 개방 문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³⁾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의 요인 중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 것은 대외적 요인인 타국의 법률시장 개방 요구로 보인다.

〈표 1〉 FTA상 양허에 따른 각 국가 별 법률시장 개방 시기

국가	FTA 발효	1단계 개방	2단계 개방	3단계 개방
칠레	2004. 4.	미개방		
싱가포르	2006. 3.			
EFTA	2006. 9.	발효 즉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인도	2010. 1.	발효 즉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SEAN	2009. 5.	발효 즉시	2011. 5.	해당사항 없음
페루	2011. 8.	발효 즉시	2013. 8.	해당사항 없음
EU	2011. 7.	발효 즉시	2013. 7.	2016. 7.
미국	2012. 3.	발효 즉시	2014. 3.	2017. 3.
콜롬비아	미발효	미발효		

(출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http://www.moj.go.kr>)

2012년 11월 현재 통상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가들은 〈표 1〉과 같다. EFTA와 인도는 1단계 개방을, ASEAN과 페루는 2단계 개방을, EU와 미국 그리고 콜롬비아는 3단계 개방을 약속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로펌들은 영국과 미국계 로펌들이다. 때문에 신희택(2012)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개방은 실질적으로 한·EU FTA 및 한·미 FTA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비록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유보목록의 형식은 각각 Negative 방식과 Positive 방식으로서 차이가 있지만⁴⁾ 핵심 내용은 사실상 상호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⁵⁾

3) 법무부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2010, 3면.

4) 통상협정에서 사용하는 무역자유화방식에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Approach)과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이 있다. 전자는 표에 기재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전부 개방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기재된 것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은 개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2013.5.23. 최종방문)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58435&mobile&categoryId=20000014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76194&mobile&categoryId=200000171>

5) 신희택, “법률시장 개방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방안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7면.

이 글에서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법률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FTA 상의 주요 의무와 법률시장 개방

(1) FTA 상의 주요 의무

한·미 FTA는 상품, 투자, 금융서비스 등 각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법률시장 개방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해당되며, 모든 개방의 과정에서 한·미 FTA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의무에 합치된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2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제12.3조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제12.4조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제12.5조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는 가장 일반적인 네 가지 의무이다.

각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내국민대우(NT)는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즉, 자국과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MFN)는 일반적으로 통상조약 등에 의거하여 그 나라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⁷⁾ 시장접근(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 의무는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총액 제한,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금지하는 의무이다.⁸⁾ 마지막으로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⁹⁾

6)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주요내용”, 2012, 103-104면.

7)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85-86면.

8)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2012, 103-104면.

9)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2012, 103-104면.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2.6조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목록에 적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즉, 한·미 FTA의 경우 서비스분야 중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⁰⁾ 유보목록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일반적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 양허안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한국은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등 총 91개 항목을 유보하였으며,¹¹⁾ 미국은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등 총 18개 항목을 유보하였다.¹²⁾ 이러한 유보는 단계적인 개방 등 위기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2) 현재유보(Annex I)와 법률시장 개방

부속서 I(Annex I)은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유보 목록이다. 현재유보란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된다.¹³⁾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 제12.4조의 시장접근(MA)과 제12.5조의 현지주재(LP)가 유보되었다. 시장접근(MA)이 유보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의 시행이 가능하여졌고, 현지주재(LP) 유보

10)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104면.

11)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108면.

12) 최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서비스교역 규율 및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63면.

13)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란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104면에서 인용.

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 및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는 사무실 요건 제한도 가능해졌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3) 미래유보(Annex II)와 법률시장 개방

현재유보가 협정상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현존 조치'를 규정하였다면,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다.¹⁴⁾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서 제11.3조 및 제12.2조의 내국민 대우, 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2.5조 현지주재가 유보되었다. 내국민대우(NT) 유보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국내의 로펌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합작기업(Joint Venture)의 조건을 다르게 제한하는 근거가 되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에 대한 유보는 의결권 및 지분비율 제한의 근거가 되고, 현지주재(LP) 유보는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에게 국내거주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필요하다.¹⁵⁾

부속서 II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대한 규정이다. 법률시장은 3단계로 나뉘어 개방된다. 1단계 개방과 2, 3단계 개방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1단계 개방은 업무 영역과 제한의 설정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2단계와 3단계 개방은 자본 투자 등 지역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법자문사의 실질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1단계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방으로, 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FLC Offices) 개설 및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

14) 관계부처합동, 전계보고서, 104면.

15) 신회택, 전계논문, 7-8면.

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FLC)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FTA와 인도가 1단계 개방에 합의하였다.

2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 후 2년을 기점으로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로펌과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은 포괄적이지 않은 개별 사안을 의미한다. ASEAN과 페루가 2단계 개방에 합의하였다. 특히 ASEAN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원국마다 법률시장의 개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2단계 개방에만 합의하였다.

3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 후 5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때에는 한국 로펌과 미국 회사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미국, EU, 콜롬비아가 3단계 개방에 합의하였다.

III. 외국법자문사법의 주요내용

FTA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의 영역이 된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를 시행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령들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업무범위와 업무수행의 방식

한국에서 외국법사무를 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의 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 외국 로펌의 명칭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 사무소)이다. 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제1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고(제2호); 이외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동법 제25조는 업무수행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는 단독개업이 불가능하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지위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단,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는 없다.

2. 자격승인과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1항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제6조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승인을 할 수 있는바, ①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하고 ②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하여야 하며 ③ 동법 제4조의 직무경력과 ④ 동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직무경력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요구된다.(외국법자문사법 제4조 제1항) 만약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률사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기간 중 3년까지 직무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신청인이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업무·보고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 중 2년까지 직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외국법자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법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설립인가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①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②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④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등이 요구된다.

요건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외국법자문사여야 하는 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3년의 직무경력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져야 하는 등 일반 외국법자문사에 비해 보다 강화된 조건을 요구받는다.

3. 기타: 국내체류의무, 징계 등

외국법자문사들에게도 국내변호사와 같은 윤리기준, 비밀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 특이한 점은 체류의무인데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되며(외국법자문사법 제29조 제1항) 이로 인해 외국법자문사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¹⁶⁾

16) 김갑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6권 제4호 통권 제358호, 국회도서관, 2009, 20면.

징계 또한 민감한 문제이다. 정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오랜 논의와 외국 사례를 통해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미 FTA 부속서Ⅱ에서 법률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보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 제6장에서는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및 대한변협 윤리규정 위반, 품위 손상 행위 등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외국법자문사법 제37조 제2항) 징계를 행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동법 제38조), 법무부와 대한변협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두는 방법으로 이중의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Ⅳ. 외국법자문사 진출 현황 및 예상되는 효과

1. 외국법자문사 및 사무소 진출 현황

2013년 3월 기준으로 총 16개의 외국 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았고, 총 39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국내 진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뒤에 FLC Office 생략)	대표자	본점사무소 소재국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 LLP)	김용균	미국
셰퍼드 멀린 리chter & 험튼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김병수	미국
클리포드 찬스 (Clifford Chance LLP)	브라이언 케시디 (Brian Cassidy)	영국
코헨 앤드 그레서 (Cohen & Gresser LLP)	손승철	미국
심슨 대처 앤 바틀렛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손영진	미국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McDermott Will & Emery LLP)	이인영	미국
폴 헤이스팅스 (서울) (Paul Hastings LLP (Seoul))	김종환	미국
클리어리 가틀립 스티븐 앤 해밀턴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이용국	미국
스콰이어 샌더스 (Squire Sanders (US) LLP)	김준용	미국
커빙턴 앤드 벌링 (Covington & Burling LLP)	다니엘 레오나르드 스피겔	미국
오 멜버니 앤 마이어스 (O'Melveny & Myers LLP)	박진원, 강성룡	미국
케이&엘 게이트즈 (K&L Gates LLP)	윤석주	미국
디엘에이 파이프 유케이 (DLA Piper UK LLP)	김경화	영국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 (Herbert Smith Freehills LLP)	앤터니 사이먼 다이먼드	영국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Greenburg Traurig LLP)	김창주	미국
맥케나 롱 & 알드리지 (McKenna Long & Aldridge LLP)	앤드류 정근 박	미국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¹⁷⁾

〈표 3〉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

원자격국		인원
미국	뉴욕	23
	캘리포니아	5
	워싱턴 D.C.	2
	일리노이	2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6
	스코틀랜드	1
총계		39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¹⁸⁾

17) 법무부고시 중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대한 2013. 3. 5.까지의 모든 고시 참고함.

18) 법무부고시 중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에 대한 2013. 3. 5.까지의 모든 고시 참고함.

특이한 점은 외국법자문사들의 문화적 배경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에 대한 법무부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명은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에서 이들이 한국계 외국인이거나 또는 한국과 원자격국의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외국 로펌은 2016년 6월까지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대신 한국 사정에 능통하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한국계 외국인을 영입 1순위로 삼고 있다.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 변호사 2명이 최근 영국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와 미국 로펌 존스데이로 이동하기도 했다.¹⁹⁾ 이 경우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시장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예상되는 효과

(1) 법률서비스 공급자 측면

법률서비스 산업 자체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특히 송무 중심의 한국 법률시장에서 비송무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로펌의 주요 진출 분야인 기업 자문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아웃바운드(outbound,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업무에서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외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해외로의 역진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법률시장 잠식 및 한국 로펌의 경영비용 증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는 한국 법률시장의 양극화된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2010년 3월 대한변협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변호사수는 1만1,500명이며 한국 법률시장 총 연매출액은 약 1조6,000억 원이다.²⁰⁾ 소속변

19) 서울신문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30011009>

호사 354명의 로펌 김앤장의 업계 추정 매출액이 약 4,600억 원임을 고려할 때,²¹⁾ 약 3%의 변호사가 대한민국 법률시장 총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 규모, 거대 자본, 실력과 경험으로 무장된 외국 로펌이 진입할 경우 소규모 로펌들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소형 로펌이 대형화를 시도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경영비용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2) 법률서비스 수요자 측면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물론이고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법 자문을 필요로 하는 한국 기업은 홍콩 등지에 사무소를 둔 외국 로펌과 상대하며 많은 불편을 느껴야 했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 구조 상 국내 호텔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하는 외국 변호사들도 존재해왔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외국법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음성적인 형태의 업무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시장 경쟁질서가 창출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외국로펌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국제계약 등에 관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된다.²²⁾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문제될 수 있다. 경제학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외국 로펌의 진입으로 불완전하나마 경쟁 시장(competitive market)이 형성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입료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장기

20)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21)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22) 문재완,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Seoul law journal』, 제43권 제4호 통권 제125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310면.

적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소규모 로펌 등이 사라지는 등 시장의 형태가 대형 로펌 중심의 과점시장(oligopoly)으로 변화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결정력을 상실한 소비자는 로펌으로부터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고가의 수입료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앞으로 예상되는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의 변호사 스카우트 노력으로 발생할 변호사 보수 상승 역시 수입료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²³⁾ 경제학적으로 조세전가(tax shifting)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상승의 요인이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국내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 역시 로펌의 부담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대형로펌이 관심을 가지는 고급 법률시장에 한정되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수익성이 낮은 하급 법률시장에서는 공급의 증가로 법률비용이 인하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존재하고 있다.²⁴⁾

V. 우리의 대응

1. 포괄적인 방향: 개방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부정적 효과 최소화

법률서비스 수요자 요구 충족, 국내 법조인들의 경쟁력 강화, 법률시장의 세계화·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법률시장 잠식이나 일반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법률시장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동안은 법률시장 개방의 기본 틀을 설정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조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문재완, 전제논문, 311면.

24) 고준성,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3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23-24면.

2. 구체적 대응방안

(1) 법률서비스 공급자 측면: 인재양성, 경영합리화

단계별 개방을 통해 얻게 된 5년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로펌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²⁵⁾ 실제 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 로펌들은 사무실, 네트워크 형성 등 시장 진입에 따른 비용, 변호사 파견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소규모 지사 형태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단계별 개방 정책으로 확보한 5년은 외국 로펌에게나 국내로펌에게나 업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며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특히 로펌의 경영합리화,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인재 육성은 합작투자기업들과의 경쟁에서의 핵심 전략이다. 대한변협은 한국변호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회협회(IBA) 아시아 본부, 세계한인변호사회 등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변호사들이 국제기구, 국제법조단체, 해외로펌, 해외기업 등에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²⁶⁾ 한국의 대형 로펌들 역시 소속변호사들에게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유학과 실무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경영대학원(MBA)이나 특수 금융과정 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로스쿨 학생 등 예비 법조인들 역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기르며²⁸⁾, 국제기구나 해외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인턴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25) 김갑유, “한미 FTA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전망 :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12호 통권 제615호, 법조협회, 2007. 69면.

26)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27) 서울경제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817114893800.htm>

28) 김범수,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국회도서관보」, 제46권 제4호 통

법률실무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 역시 로스쿨 협의회의와의 협조를 통해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및 외국어교육과 국제법률실무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²⁹⁾

둘째, 로펌의 경영합리화가 요구된다.³⁰⁾ 개방의 3단계에 이르러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기업이 형성될 경우 송무 등 순수 국내업무에 진출하기 위한 변호사 고용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변호사 고용 조건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³¹⁾ 경영합리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승급체계를 갖추어³²⁾ 3단계 개방 시대에 예측되는 변호사 고용 시장의 급변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역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형성이 요구된다.

첫째,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한다. 자유무역협정 및 외국법자문사법, 대한변협 회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법 자문사의 합법적 국내 활동은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나 외국법 자문사의 등록 및 감독기관으로서 외국법 자문사의 등록 자격 및 요건을 엄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탈법, 편법 방식 혹은 한국변호사를 하청형태로 고용하여 한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³³⁾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법률시장 개방 전, 외국변호사들은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적으로는 변호사 아닌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에 따라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업무·보고를 주

권 제358호, 국회도서관, 2009, 9면.

29)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30) 김갑유, 전계논문, 2007, 77-78면.

31) 문재완, 전계논문, 311면.

32) 김갑유, 전계논문, 2007, 77-78면.

33)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변호사로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변칙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법률시장 개방 후에는 우회적인 방법 혹은 이면계약을 통한 사실상의 동업이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업무들을 규제하지 못할 경우 일류 로펌의 국내 업무가 제한되는 반면 2류·3류 로펌들에 의해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³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법률시장 선진화의 기틀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3)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법 자문사의 합법적 활동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 이외에도 실제 문제 발생 시 불만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³⁵⁾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극단적인 이익의 추구로 인해 법조 직업의 공공성, 공익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VI. 결론

이 글에서는 FTA에 따른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위기와 기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 중 내용과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법률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률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 한·미 FTA 및 외국법자문사법에 나타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

34) 김갑유, 전계논문, 2009, 19면.

35)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은 단계적 개방과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즉, 경쟁을 통한 한국 로펌의 역량 강화, 수요자 요구 만족 등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 하되 외국 로펌으로 인한 법률시장 잠식 및 불공정 경쟁을 막는 등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한·미 FTA의 부속서(annex)를 통해 많은 의무들을 유보하였다.

· 2013년 3월 현재 16개의 영미 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자격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입하였고, 39명의 외국법자문사들이 자격승인을 받았다. 단계적 개방 정책에 따라 아직 원자격국법과 국제 공법에 관한 자문 업무밖에 담당할 수 없지만, 영국 로펌의 경우 올해 7월, 미국 로펌의 경우 1년 후인 2014년 3월부터는 외국법사무와 국내법사무가 혼재된 개별 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각각 3년 후인 2016년 7월, 4년 후인 2017년 3월부터는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설립과 한국 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대응의 기본방향은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으로 법률서비스 공급자 측면의 인재양성과 경영합리화, 정부의 역할로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 그리고 법률소비자 보호를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을 염두에 둔 일반적인 수준의 대응이며 각 로펌과 법조인들은 독자생존전략, 글로벌 로펌과의 합병, 또는 다른 FTA 체결국가의 로컬 로펌과의 합병 등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맞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존전략에 대해 더욱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주요내용”, 2012.

법무부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201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 국제경제법」, 박영사, 2012.

2. 논문 및 학술기사

고준성,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3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김갑유, “한미 FTA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전망 :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제56권 제12호 통권 제615호, 법조협회, 2007.

_____,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6권 제4호 통권 제358호, 국회도서관, 2009.

김범수,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국회도서관보」, 제46권 제4호 통권 제358호, 국회도서관, 2009.

문재완,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Seoul law journal」, 제43권 제4호 통권 제125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신희택, “법률시장 개방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방안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이기영, “법률시장 개방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연구”, 「법조」, 제60권 제10호 통권 제661호, 법조협회, 2011.

조능래,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법무사」, 2012년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012.

최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서비스교역 규율 및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법적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3. 인터넷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2013.5.23. 최종방문)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58435&mobile&categoryId=20000014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76194&mobile&categoryId=200000171>

서울경제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817114893800.htm>

서울신문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30011009>

해양한국 기사 (2013.3.20. 최종방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6>

[Abstract]

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Market and Our Countermeasures

Lee, Soh-Hyun

The Master's Course,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Opening Korean legal services market began in earnest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In accordance with the gradual opening-up policy, Foreign Legal Consultants (hereinafter 'FLC') could provide only legal advisory services regarding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are licensed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now. From Phase 2, FLCs can enter into specific cooperative agreements with Korean law firms in order to be able to jointly deal with cases wher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are mixed. Also, foreign law firms(FLC offices) can establish joint venture firms

with Korean law firms and employ Korean-licensed lawyers as partners or associates from Phase 3. Korea has been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with policy stances such as a gradual and step-by-step opening and a thorough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 concrete way, Korea has realized a gradual opening by reservations in FTA and has established a ground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LCs' qualification approval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opening Korean legal market through a review of FTA and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nd to examine how to respond in preparation for future competition. The research shows that proactive countermeasures of related subjects, such as lawyers and government, is a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and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opening.

Key words : opening legal services market, Free Trade Agreement(FTA),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reservation, countermeasure